

의안번호	제 2010 - 25 호
의 결	2010. 12. 21.
연 월 일	(제30차 회의)

의 결 안 건

공무집행방해범죄/마약범죄/ 사기범죄/사문서범죄 양형기준안 확정의 건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1. 의결 주문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별지1과 같이,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별지2와 같이,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별지3과 같이, 사문서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별지4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인 공무집행방해범죄, 마약범죄, 사기범죄, 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안을 확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별지와 같음

4. 별지

○ 별지1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안

○ 별지2 : 마약범죄 양형기준안

○ 별지3 :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 별지4 :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안

◈ 약어표 ◈

□ 마약관리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유해물질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ㅁ 특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경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별지1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안

[적용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은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제1항, 제2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137조), 공용물무효·파괴(제141조 제1항, 제2항), 특수공무방해 및 특수공무방해치사상(제144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공무집행방해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8월	6월-1년4월	1년-4년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10월	8월-1년6월	1년-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 한 경우 ○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 나 부적절한 경우	│ 유영) │○ 피해 있은 골므웨이 다스이 경
	행위자 <i> </i>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동종 누범
일반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 우(제1유형)
양형 인자	행위자 <i> </i>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공용물무효·파괴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공용물무효	-8월	6월-1년6월	1년-3년
공용물파괴	6월-1년6월	10월-2년6월	2년-5년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행위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 미한 경우 ○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 나 부적절한 경우	우
양형 인자	행위자 <i> </i>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동종 누범
일반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 우
양형 인자	행위자 <i> </i>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특수공무방해치상	1년6월-3년	2년-4년	3년-6년
특수공무방해치사	3년-6년	5년-8년	7년-10년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행위	○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 나 부적절한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 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제2유형)	○ 피애 입은 공무원이 나주인 경 우 ○ 곡무반해의 정도가 주대하 경
	행위자 <i> </i>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 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	행위	○ 소극 가담	○ 기본범죄가 계획적 범행인 경 우
양형 인자		○ 범행 후 구호 후송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 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제136조 제2항)
- 위계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형법 제 137조)

2.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제141조 제1항)
- 공용물파괴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 기를 파괴(제141조 제2항)

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무효·파괴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함(제144조 제2항)
- 특수공무방해치사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무효·파괴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함(제144조 제2항)

[양형인자의 정의]

1. 공무집행방해

가.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권한 및 법률상 방식을 갖추긴 하였으나, 공무집행의 방법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거나 공무원의 언행이 피고인을 부적절하게 자극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치료기간이 약 4주~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다.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 공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 한 정도 또는 기간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라.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3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한다.

마. 소극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 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무집 행방해를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용물무효·파괴

가.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무효 또는 파괴된 공용물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경미하여 원상 회복 또는 수리에 큰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은 피해자 또는 유족의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밖의 경우 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 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 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 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가중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 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 계획적 범행 또는 반복적 범행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 생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 상, 3회 이상 벌금)	경우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 위한 진지한
참작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약물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진지한 반성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 도한 곤경을 수반 ○ 피고인이 고령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진지한 반성 ○ 자수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확정일, 실형은 집행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 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 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 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별지2

마약범죄 양형기준안

[적용범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제2항, 제59조 제1항 제1호 내지 8호, 제11호 내지 제13호,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2항,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제8호,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투약·단순소지 등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8월	6월-1년	8월-1년6월
2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6월-10월	8월-1년6월	10월-2년
3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6월-1년6월	10월-2년	1년-3년
4	마약, 향정 가.목 등	10월-2년	1년-3년	2년-4년

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 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 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인자	행위자 <i> </i>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마약범죄 정보 제공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	행위	○ 소극 가담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 른 경우
양형 인자	행위자 <i> </i>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 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2. 매매·알선 등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8월	6월-1년4월	10월-2년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4년
3	마약, 향정 가.목 등	2년6월-5년	4년-7년	5년-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9년	7년-11년	9년-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		가중요소	
특별 양형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 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 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 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행위자 <i> </i>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마약범죄 정보 제공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 상습범인 경우(제1, 2유형의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 른 경우
양형 인자	행위자 <i> </i>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 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3. 수출입·제조 등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향정 라.목 등	8월-1년6월	10월-2년	1년6월-3년
2	대마, 향정 다.목 등	1년-3년	2년-4년	3년-6년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2년6월-5년	4년-7년	5년-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9년	7년-11년	9년-14년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 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 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 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행위자 <i> </i>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마약범죄 정보 제공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 상습범인 경우(제1, 2유형의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	행위	○ 소극 가담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 른 경우
양형 인자	행위자 <i> </i>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 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4. 대량범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	2년-4년	3년-6년	5년-8년
제2유형	3년-6년	5년-8년	7년-10년
제3유형	6년-9년	8년-11년	10년-14년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변 등 등 등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 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 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 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행위자 <i> </i>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마약범죄 정보 제공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	행위	○ 소극 가담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 른 경우
양형 인자	행위자 <i> </i>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 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유형의 정의]

1. 투약·단순소지 등

구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제1유형	■ 환각물질 ○ 섭취·흡입/같은 목적 소지	○ 유해물질법 제58조 제3호	○ 3년 이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향정 라.목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 처방전 발부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 반수단 제공 ○ 상습범	제1항 제4호 ○ 마약관리법 제61조	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향정 마.목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 반수단 제공 ○ 상습범		○ 5년 이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1/2 가중
제2유형	■ 대마 ○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사용 ○ 흡연·섭취/같은 목적 소지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 반수단 제공 ○ 상습범	제1항 제7호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 ○ 마약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1/2 가중
	■ 마약 원료식물, 마약 성분 함유 원 료·종자·종묘 ○ 원료식물 재배,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1/2 가중
	■ 향정 가.목 원료식물 ○ 원료식물 흡연·섭취/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마약관리법 제61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1/2 가중
제3유형	■ 향정 나.목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 처방전 발부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 마약관리법 제60조	○ 10년 이하 징역 또 는 1억원 이하 벌금 ○ 1/2 가중

구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 반수단 제공 ○ 상습범		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향정 다.목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 처방전 발부 ○ 상습범		○ 10년 이하 징역 또 는 1억원 이하 벌금 ○ 1/2 가중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 반수단 제공 ○ 상습범		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마약 ○ 소지·소유·관리 ○ 상습범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 반수단 제공 ○ 상습범	제1항 제1호 ○ 마약관리법제59조 제2항 ○ 마약관리법 제60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2 가중
제4유형	■ 디아세칠모르핀, 염류, 함유물 ○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투약·교부 ○ 상습범	제1항 제4호	○ 1년 이상의 유기정 역 ○ 3년 이상의 유기정 역
	■ 향정 가.목 ○ 소지·소유·사용·관리 ○ 상습범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 반수단 제공 ○ 상습범	제1항 제6호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2항(가중)	○ 1년 이상의 유기정 역 ○ 3년 이상의 유기정 역 ○ 10년 이하 징역 또 는 1억원 이하 벌금 ○ 1/2 가중

2. 매매·알선 등

구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제1유형	■ 환각물질 ○ 판매·제공	○ 유해물질법 제58조 제3호	○ 3년 이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향정 라.목○ 매매·알선·교부○ 상습범		○ 5년 이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1/2 가중
\(\frac{1}{2}\) 1	■ 대마 ○ 대마 수수 ○ 대마·대마초종자 껍질 매매·알선 ○ 상습범	제1항 제7호 ○ 마약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1/2 가중
	■ 향정 나.목 ○ 매매·알선·수수·교부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60조	○ 10년 이하 징역 또 는 1억원 이하 벌금 ○ 1/2 가중
	■ 향정 다.목 ○ 매매·알선·수수·교부 ○ 상습범	I .	○ 10년 이하 징역 또 는 1억원 이하 벌금 ○ 1/2 가중
제2유형	■ 대마 ○ 매매·알선/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	제1항 제12호	1년 이상의 유기정역3년 이상의 유기정역
\(\alpha \) \(\begin{align*} \text{11 & 6} \\ \text{12 & 11 & 6} \\ \text{13 & 11 & 6} \\ \text{14 & 11 & 6} \\ \text{16 & 12 & 11 & 6} \\ \text{16 & 12 & 11 & 6} \\ \text{16 & 12 & 11 & 6} \\ \text{17 & 12 & 11 & 6} \\ \text{18 & 12 & 11 & 6} \\ 18 & 12 &	■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 관리·수수·성분 추출 ○ 상습범	제1항 제3호	1년 이상의 유기징역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마약, 향정 원료물질 ○ 제조 목적 매매·알선·수수/같 은 목적 소지·소유·사용 ○ 상습범	제1항 제5호	1년 이상의 유기징역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향정 가.목 원료식물 ○ 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소 지·소유 ○ 상습범	제1항 제7호	○ 1년 이상의 유기징 역 ○ 3년 이상의 유기징 역

구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죄 ○ 수수·교부·흡연·섭취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59조제1항 제13호○ 마약관리법 제59조제2항	역
제3유형	■ 마약 ○ 매매·알선/같은 목적 소지·소유 ■ 향정 가.목 ○ 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소지·소유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향정 범죄 ○ 매매·수수·조제·투약·교부	제1항 제3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4유형	■ 마약, 향정 가.목 ○ 영리 목적 매매·알선·수수등/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교부 ○ 상습 매매·알선·수수등/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교부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2항○ 마약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 사형·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 기타 향정 ○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교부 ○ 상습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교부	제2항	년 이상의 징역

3. 수출입ㆍ제조 등

구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제1유형	■ 마약 원료식물 ○ 수출입·매매·제조 목적 재배/같은 목적 그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소지· 소유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호○ 마약관리법 제59조 제2항	역
	■ 대마초 ○ 수출입·매매·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 마약관리법 제59조 제2항	역
	■ 향정 라.목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마약관리법 제60조 제2항	는 1억원 이하 벌금

구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제2유형	■ 대마 ○ 수출입/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제4유형에 포섭 ○ 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58 조 제1항 제5호 ○ 마약관리법 제59 조 제1항 제12호 ○ 마약관리법 제59 조 제2항 	 ○ 무기 또는 5년 이 상의 징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향정 다.목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8호○ 마약관리법 제59조 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유형	■ 마약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향정 가.목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원료식물 성분 추출/수출입/같은 목적 소지·소유 ■ 향정 나.목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 향정 원료물질 ○ 마약, 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제조·수출입/같은 목적 원료물질 소지·소유	○ 마약관리법 제58 조 제1항 제1호 ○ 마약관리법 제58 조 제1항 제3호 ○ 마약관리법 제58 조 제1항 제4호 ○ 마약관리법 제58 조 제1항 제6호 ○ 마약관리법 제58 조 제1항 제6호	○ 무기 또는 5년 이 상의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 상의 징역
제4유형	■ 마약, 향정 가.목, 나.목, 대마, 마약 및 향정 원료물질 ○ 영리 목적 수출입·제조등 ○ 상습 수출입·제조등	○ 마약관리법 제58 조 제2항 ○ 마약관리법 제58 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4. 대량범

구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제1유형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 조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 액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특가법 제 11조 제2항 제2호)		○ 무기 또는 3년 이 상의 징역
제2유형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 조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 액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특가법		○ 무기 또는 3년 이 상의 징역

구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제11조 제2항 제2호)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제3유형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 조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 액 5,000만원 이상(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1 호)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0110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원 이상		

[양형인자의 정의]

1. 투약·단순소지 등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소극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 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무집 행방해를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알선 등

가.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또는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수출입·제조 등

가. 상습범인 경우(제1, 2유형의 경우)

○ 다만, 제2유형 중 대마 수출입·제조 및 같은 목적 소지·소유행위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상습범(같은 조 제2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 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는 행 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밖의 경우 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 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 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가중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이 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참작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범죄 ○ 상습범인 경우 ○ 대량범인 경우 ○ 당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회 이상 벌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마약범죄 정보 제공 등 수사에 적 극적으로 협조한 경우(또는 적극 적 수사협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글긴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진지한 반성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 도한 곤경을 수반 ○ 피고인이 고령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확정일, 실형은 집행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 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 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별지3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적용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사기(형법 제347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제347조의 2), 준사기(제348조), 상습사기(제351조), 특경법상 사기(특경법 제3조 제1항) 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사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제3 <mark>유형</mark>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	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특별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행한 경우
	ᆌ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양형	행위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	야기한 경우
인자		극적 범행 가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	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
		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지른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
			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농아자	
	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상습성인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동종 누범
	<i> </i> フ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타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	행위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 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 상으로 한 경우 ○신뢰관계를 악용한 경우
양형 인자	행위 자 <i>/</i> 기 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 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 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조직적 사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제3 <mark>유형</mark>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1년
제5 <mark>유형</mark>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13년	11년 이상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 극적 범행 가담 또는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 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 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
	행위자	○농아자	○상습성인 경우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동종 누범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	행위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 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신뢰관계를 악용한 경우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 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 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I. 일반사기

- 제1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제2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3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4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인 경우를 의미하다.
- 제5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 미한다.

Ⅱ. 조직적 사기

- 조직적 사기라 함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면, 전화금융사기단의 전화금융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토지사기단의 토지사기, 조직적인 국가보조금사기 등).
- 제1유형 내지 제5유형의 정의는 일반사기의 그것과 동일하다.

[양형인자의 정의]

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초기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으나 나중에 소극적 또는 부작위의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원래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사정 변경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음에도 보조금을 계속 교부받은 경우, 계속적인 금전거래 중간에 사업상 생긴 문제를 고지하지 않고 계속 금전거래 등)
 - 소극적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피해자의 착오 상태에 편승한 경우,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 위에 의한 기망행위 등)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

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된 경우
 - 피해자 회사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 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 하여 범행한 경우
- 문서위조, 장부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범행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 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내부비리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 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 미한다.

사.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이 피해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밖의 경우 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 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을 선택할 수도 있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 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동종경합범 가중방법

-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① 일반사기에 해당되는 범죄 사이의 경합범 또는 조직적 사기에 해당되는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다만,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② 일반사기에 해당되는 범죄와 조직적 사기에 해당되는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아래의 '3. 이종경합범 가중방법'의 예에따른다.

4. 이종경합범 가중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 이종경합범 중에 일반사기에 해당되는 범죄 사이의 경합범 또는 조 직적 사기에 해당되는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위 동종경합범 가중방법을 먼저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 위를 기준으로, 위 이종경합범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 일반사기에 해당되는 범죄와 조직적 사기에 해당되는 범죄가 상습사 기의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사기의 형 량범위표와 조직적인 사기의 형량범위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뒤 총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집행유예 기준]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 요 참 작 사 유	●동종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이상, 3회이상 벌금)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 반 참 작 사 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반복적 범행 ●비난 동기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 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 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 수수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회복 노력 없음

경우

-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회 복,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 화되지 아니한 경우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 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 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아무런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손해발생이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 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 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별지4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안

[적용범위]

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은 사문서등 위조·변조(형법 제231조), 자격모용 사문서등 작성(제232조), 사전자기록위작·변작(제232조의2), 허위진단서등 작성(제233조), 위 문서 등의 행사(제234조)의 죄를 저지른 성인 (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사문서 위조·변조 등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	- 1년	6월 - 2년	1년 - 3년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위·변조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 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 에 있는 경우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 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 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i> </i> 기타	○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동종 누범(공문서 위·변조 등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가담 ○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 지 높지 않은 경우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에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서(다만, 범죄로 인하여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 전문위·변조장비(컬러프린 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 <i> </i>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 지 않는 동종전과(공문서 범죄 포함)

2. 허위진단서등 작성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	- 8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제2유형	6월 - 1년6월	8월 - 2년	1년6월 - 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 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허위진단서 작성에 따라 취한 불법적인 이득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 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 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 된 경우 ○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5년 이내 동종 전과(공문 서범죄 포함) ○ 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회 복의 방해
일반	행위	○ 소극가담	○ 허위진단서를 스스로 사용 한 경우
 양형 인자	행위자 <i>/</i>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 지 않는 동종전과(공문서 범죄 포함)

[유형의 정의]

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등 위조·변조(형법 제231조), 자격모용 사문서등 작성(제232조), 사전자기록위작·변작(제232조의2), 위 문서 등의 행사(제234조)의 죄를 저지른 경우

2. 허위진단서등 작성

- 허위진단서등 작성(형법 제233조)의 죄를 저지른 경우
- 제1유형 :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아래와 같이 자신이나 제3자의 업무상 편의, 편법적인 업무수행 등 소극적 동기에 따른 행위인 경우
 - 보험처리과정에서 실수로 진단서 징구를 누락하거나 분실하였다가 이를 같은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끼워 넣는 경우와 같이 단순히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경우
 - 실제 환자를 보고 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사진이나 영상, 통화 등을 근거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환자나 보험금청구인의 진단서가 필요한데 진단서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등 문제가 있어 임의로 작성하는 경우 등 편법적인 방법을 도모한 경우
- 제2유형 : 적극적으로, 자기나 제3자의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사회 적, 경제적 지위나 이득을 취할 의도 아래 이루어진 행위인 경우
 - 보험금 편취 목적, 병역회피 목적, 장애인증 발급을 통한 장애인 자 격취득 목적,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격 취득 목적 등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 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 그밖에 위와 동일시 할 수 있는 범행가담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나.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동기가 단순 호기심 ·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 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다.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 화되지 못한 경우

- 범행을 통해 의도한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궁극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라.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대규모의 이 득을 취득하거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질서를 교란하여 그 폐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
- 마. 위·변조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조직적 범죄에 있어서 조직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실질적인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조기술자와 조직의 하부 실무자 내지 조직책이 아닌 조직의 중간 간부급 이상의 알선·전달담당 책임자

바.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이 아닌 변조행위(예 : 단순한 날짜 변조. 단, 이 경우에도 권리의 소멸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

사.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피고인은 전문위·변조범 내지 위·변조단이 아니나 전문적인 위·변조 범 내지 알선책 등 위·변조단의 구성원에게 의뢰하여 문서를 위·변 조한 경우(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변조전문가에게 대가 를 주고 위·변조를 의뢰하거나 위·변조단의 알선책 등을 통해 위·변 조를 의뢰한 경우)

아.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서

- 위·변조의 대상이 된 문서가 처분문서, 증거로 제출되는 문서 등 사회적인 공신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 를 증명하는 서류인 경우(다만, 위·변조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 해가 큰 경우에 해당하면 따로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 다)

자. 소극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밖의 경우 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 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 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 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 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가중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이 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집행유예 기준]

1. 사문서위조·변조 등

구 분	부정적	긍정적
	• 동종전과 (5년 이내 집행유예	
주요	이상,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전과)	있는 경우
	•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중대한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등)
사유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죄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공범으로서 소극적 가담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시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참작	· 급형 구 6기 문째 고는 문째시 - - - -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1 11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과도한 곤경을 수반
	없음	• 피고인이 고령

2. 허위진단서등 작성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동종전과 (5년 이내 집행유예이상,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전과)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큰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거절하기 어려운 자의 지시나 요구에 의한 범행 포함)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참작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경우 지시·복종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지시 내지 교사 범행 후 증거 은폐 내지 은폐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 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 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